

[별표 6] <개정 2000.12.11, 2002.8.5, 2004.8.4>

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(제16조 및 제26조관련)

1. 무상 채취·수거 대상

- 가. 법 제12조,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
- 나.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또는 수거·폐기하여야 하는 축산물
- 다. 식중독·인수공통전염병발생 등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원인규명·역학조사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

2. 채취(수거)량 기준

가. 축산물

축 산 물 의 종 류	채 취 · 수 거 량 (단 위)	비 고
식 육·포장육	500(g)	
원유	500(ml)	농가별 채취량은 20ml
식용란	5(개)	
식육가공품	500(g/ml)	
유가공품	500(g/ml)	
알가공품	200(g/ml)	

비 고

1.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.
2.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안에서 채취하되,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.
3.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·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다.
4.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·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.
5.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.
6.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.
7.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·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.
8. 채취(수거)대상 축산물이 채취(수거)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(수거)할 수 있다.

나. 삭제 <2000.12.11>